식품 중 Ethylene Oxide 기준규격 개정

개정내용

한국의 라면(스프)에서 에틸렌옥사이드 검출과 관련하여 해당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고자 개정을 함. 해당 개정에서는 안전관리 대상은 즉석면류이고 밀면, 계란국수, 당면 및 당면과 같은 다른 유형 면류는 제외임.

즉석면류와 동일한 CN 코드 1902 30 10에 따라 신고된 제품의 경우 '식품 및 사료(의도된 사용)', 'CN 코드' 및 'TARIC'을 참조하는 열에 설명을 제공하여야 함. 설명 제공 시 시행 규정(EU) 2019/1793에 대한 부록 II의 1항에 있는 표의 관련 항목에서 하위 항목'을 참조함.

표 1. 일시적으로 안전관리(통제) 강화되는 제3국의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

원산지	식품 및 사료 (용도)	CN 코드(¹)	TARIC 하위 부분	위험요소	검역빈도 (%)
한국	즉석면류 시즈닝 스프함유	ex) 1902 30 10	30	에틸렌옥사이드 (¹¹)	20

(¹) : CN 코드 아래의 특정 제품만 검사해야 하는 경우 CN 코드는 "ex"로 표시

(¹¹) : 2-chloroethanol의 잔류량을 ethylene oxide 잔류량과 합산함. 식품 첨가물의 경우 적용 가능한 최대잔류량은 0.1 mg/kg(LOQ)임. 규정(EU) No 231/2012에서 에틸렌 옥사이드는 식품첨가물에 살균목적으로 사용 금지함.

[참고 : EU의 에틸렌옥사이드 최대잔류허용량]

o 곡류, 과일류, 채소류 : 0.02 ppm

o 견과류, 허브류, 유지종실류 : 0.05 ppm

o 차, 향신료 : 0.1 ppm

시행일 : 2022. 6. 18.

(유럽 연합 관보의 게재일 2022. 5. 30.로부터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)